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

광진구 공고 제2018- 559호

반출금지 구역	면적 (ha)	피해상황			행위제한 사항	위반 시 벌칙
		장소	면적 (ha)	감염목 수 (본)		
중곡4동	232	중랑구 면목3 · 8동 산1-3	0.01	1	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②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5일

광진구청장